

#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출자

-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,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.

## 2. 근거 법령

- 평생교육법 제9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⇒ 평생교육기회부여에 노력
- 평생교육법 제14조(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) ⇒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
## 3. 제안 이유

- 평생교육법에 의거, 개인의 자아실현, 사회적 통합 증진,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며,
- 언제, 어디서,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고,
- 지역사회 모든 평생교육시설과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고, 연계시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지역 시민에 의한, 시민을 위한,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 골자

-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주요 수행사업(안 제3조)
  - 평생학습과 관련한 정책개발, 연구, 기관 및 단체간의 지원사업, 시민교육계획의 수립 및 홍보, 정보제공 등.

- 평생학습정보센터의 관리·운영 방안(안 제4조)
  - 관리·운영을 시장이 하되,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 가능
- 위탁운영비 지원(안 제5조)
  -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무비용 지원.
- 이천시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(안제7조)
  - 평생학습도시의 건설 촉진과 평생학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.
  - 당연직위원 : 시장, 교육장, 시청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, 교육청 학무과장.
  - 위촉직위원 : 시의원,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평생학습관련 기관·단체의 장, 5급 이상의 공무원 등.
  - 위원장을 시장, 부위원장을 교육장으로 당연직화 함.
- 수장 등의 지급(안 제11조)
  -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수당 지급.

#### 4. 검토의견

-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,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,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하여,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
- 20만 이천 시민이 평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도록 하여,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.